

의안번호	2206663
의 퇴 인	신성범 의원
회 답 일	2025. 3. 10.
추계번호	24B6024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□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동통신서비스 재판매 사업자의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5억원(연평균 5억원)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-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이동통신서비스 재판매 사업자 운영현황 실태조사 (안 제38조의3)	500	500	500	500	500	2,500	500

주: 1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한 이동통신서비스 재판매 사업자의 운영현황 실태조사(안)에 따른 재정소요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조사내용 및 방식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2.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제38조의3(이동통신 서비스 재판매 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) 제1항 신설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재판매 ¹⁾ 하는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제38조의3(이동통신 서비스 재판매 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) 제5항 신설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입자 수 산출 및 이동통신서비스 재판매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재판매 사업자의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. 이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3	법률 제19856호 「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」 부칙 제2조 삭제	제3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 중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부분에 대한 유효기간(1년) 삭제 ※ 현행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 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때에 따라야 할 도매제공의 조건·절차·방법 및 대가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는데, 대가 산정에 관한 기준 고시에 대한 유효기간(1년)을 삭제함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제38조의3(이동통신서비스 재판매 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) 제1항 신설	×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-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동통신서비스 재판매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해당 시책의 종류, 대상, 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음
2	제38조의3(이동통신서비스 재판매 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) 제5항 신설	○	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추계
3	법률 제19856호 「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」 부칙 제1조 제3호 및 제2조 삭제	-	미대상 -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, 도매제공 대가의 산정 기준의 유효기간('25.3.29.)을 설정한 법률 제19856호의 부칙 제2조를 삭제하면 현행 도매제공 대가의 산정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내용으로서 부칙 삭제에 따른 추가 비용 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

- 1)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38조(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)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(이하 "재판매"라 한다)할 수 있도록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도록 허용(이하 "도매제공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본 추계에서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조항을 제외하고 안 제38조의3제5항의 이동통신서비스 재판매 사업 실태조사에 대한 비용을 추계함
 -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동통신서비스 재판매 사업자의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국회 심의기간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이동통신서비스 재판매 사업자의 운영현황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태조사(안 제38조의3제5항 신설)
 - 개정안은 이동통신서비스 재판매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재판매 사업자의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,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유사 실태조사 사례로,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행법 제34조의2²⁾에 따라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를 202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고, 최근 3년간 매년 4~5억원³⁾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

2)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34조의2(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대상, 조사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3) 인터넷 이용환경 고도화 사업(방송통신발전기금, 2032-302)의 내역사업으로 2023년 5억원, 2024년 4.5억원, 2025년 4억원 편성

[표 2]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내용

- (대상) 부가통신사업 신고 및 신고 간주 사업자(1만 7천여개社) 중 휴폐업 사업자 및 자본금 1억원 미만 사업자 등을 제외한 5천여개 사업자를 모집단으로 선정하여 조사 실시 - (주요내용) 부가통신사업자 일반현황, 재무 및 인력 현황, 연구개발·보유기술 현황, 부가통신서비스 제공 현황 등을 조사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, 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동통신서비스 재판매 사업자의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5억원(연평균 5억원)으로 추계됨

[표 3] 이동통신서비스 재판매 사업자 운영현황 실태조사(안)

구분	내용
조사대상	- 「전기통신사업법」에 따라 신고·등록된 이동통신서비스 재판매 사업자('24.12월 기준, 86개)
조사내용	- '일반현황' 조사와 '심층현황' 조사로 구분 ① (일반현황 조사)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재판매(알뜰폰)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입자 현황, 매출액 등 현황 설문조사(연중 수시) ② (심층현황 조사) 일반현황 조사를 토대로 알뜰폰 시장의 경쟁 환경, 경영 여건 등 세부 사항을 조사(면접, 사업자 의견 수렴 등)
연간 소요예산	약 5억원 - 일반현황 조사 2.5억원, 심층현황 조사 2.5억원

주: 현행법 제34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사례를 참고하여 산출한 것으로, 향후 집행을 위한 실제 실태조사 설계 과정 등을 거치며 변동 가능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[표 4] 이동통신서비스 재판매 사업자의 운영현황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재판매 사업자 운영현황 실태조사	500	500	500	500	500	2,500	500

주: 1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한 이동통신서비스 재판매 사업자의 운영현황 실태조사(안)에 따른 재정소요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조사내용 및 방식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2.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한 이동통신서비스 재판매 사업자의 운영 현황 실태조사(안)에 따른 재정소요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조사내용 및 방식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의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박인재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인재	02-6788-4650	powerreset@assembly.go.kr